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연월일 | 20 . . .<br>(제 회) |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유인촌<br>(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제출연월일 | 20 .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 1. 의결주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세계유산지구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사업자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사업자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을 위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교육 및 지원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98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보상비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 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등으로 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을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 및 범위 등으로 하며,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승인 등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방식 및 절차를 정하고, 전문인력·전담조직·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세계유산 또는 세

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을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등(안 제3조의2 신설)

보상비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 사업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등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으로 정함.

#### 나.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안 제3조의3 신설)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 및 범위,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나 세계유산 주변 환경개선 등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경관 저해나 지형 훼손 등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으로 정함.

#### 다. 대상사업의 사전검토(안 제3조의4 신설)

1)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자 또는 국가유산청장의 요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위치, 면적·총사업비 등 규모, 대상사업 구역 내 건축 예정 건축물의 최고높이 등이 포함된 사전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

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사전검토요청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대상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으로, 대상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는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작성 비대상으로 나누어 관할 시·도지사, 대상사업의 허가·인가·승인·결정 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안 제3조의5 신설)

1) 대상사업의 사전검토 결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작성 대상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하도록 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 결과에 따라 작성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세계유산영향평가서에는 대상사업 및 해당 세계유산에 대한 구체적 설명,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해당 방안을 적용한 후 남은 부정적 영향의 규모 및 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마.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승인 등(안 제3조의7 및 제3조의8 신설)

1) 국가유산청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세계유산영향평가서에 대해 대상

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 방법이 적정한지 및 분석결과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해당 방안을 적용한 후 남는 부정적 영향의 유무 및 그 정도에 관한 예측이 타당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적절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승인하고,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 대상사업의 허가·인가·승인·결정 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바.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안 제3조의10 신설)

국가유산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세계유산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7. 26. ~ 9. 4., 10. 7. ~ 10.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9건(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보호 등)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총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가 500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2. 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이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시행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세계유산지구의 관할 시·도지사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대상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해당 대상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가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대상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해당 대상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3(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 및 범위
2.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세계유산 주변 환경개선 등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3. 경관 저해, 지형 훼손 등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4.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하 “제거·저감방안”이라 한다)의 적정성
5. 제거·저감방안을 적용한 후 남는 부정적 영향(이하 “잔존 영향”이라 한다)의 규모 및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4(대상사업의 사전검토)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요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전검토요청서(이하 “사전검토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상사업의 위치
2. 대상사업의 면적, 총사업비 등 규모

3. 대상사업 구역 내 건축 예정 건축물의 최고높이
4.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계유산 구역과의 이격거리
5. 대상사업의 허가·인가·승인·결정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허가기관의 장”이라 한다)
6.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대상사업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사전검토요청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허가기관의 장 및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라 한다) 작성 대상: 대상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작성 비대상: 대상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이 경우 사업자가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 ④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후 대상사업의 계획 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사전검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5(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① 제3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 결과에 따라 작성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대상사업 및 해당 세계유산에 대한 구체적 설명
2.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
3. 제거·저감방안
4. 잔존 영향의 규모 및 범위
5. 세계유산지구 내 토지 소유자, 거주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6.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종합의견

③ 사업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초안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 또는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제2항제5호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20일 이상 들어야 한다.

④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6(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과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갖출 것

가. 국가유산 관련 학과 및 세계유산, 건축·토목, 도시계획·도시공학, 조경·경관·지질·생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근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가목에 따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추는 것

②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세계유산영향평가 사업계획서

3. 최근 3년간 세계유산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수행 실적에 관한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7(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의5에 따라 제출된 세계유산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 방법이 적절한지 및 분석결과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2. 제거·저감방안이 적절한지 여부

3. 잔존 영향의 유무 및 그 정도에 관한 예측이 타당한지 여부

4. 대상사업의 추진으로 달성되는 공익·사익과 해당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형량이 적절한지 여부

②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2. 대상사업 또는 해당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

3.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산 관련 학과 및 세계유산, 건축·토목, 도시계획·도시공학, 조경·경관·지질·생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

의 근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가목에 따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3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승인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의7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승인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 허가기관의 장 및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승인 사실을 통보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또는 규모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7 및 이 조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1. 대상사업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2. 대상사업의 면적, 총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등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3. 대상사업 구역 내 건축 예정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또는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4.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계유산 구역과의 이격거리가 감소하는 경우

제3조의9(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보완·조정 등) ①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또는 대상사업 계획 등(이하 “대상사업계

획등”이라 한다)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3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의7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상사업계획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대상사업계획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보완·조정
2. 제1항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상사업계획등의 보완·조정

③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완·조정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보완·조정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대상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에 변경사항 대비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제3조의7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제3조의10(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

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세계유산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수행 실적  
적이 있을 것

3. 법 제11조의8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등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세  
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  
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세  
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 지정서를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8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  
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자료를 제  
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반기별 운영실적: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 실시 시기(제3조의2제3항 관련)

1.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 관련)

|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                                                        |
|---------------------------------------------------------------------------------------------------------------------------------------------------------------------------------------------------------------------------|--------------------------------------------------------------------------------------|
| 가.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계유산 구역에서 시행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설계승인 전                                               |
|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사업 또는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다만,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축·증설하여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 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사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 같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전 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 |

|                                                                                    |                   |
|------------------------------------------------------------------------------------|-------------------|
| 업. 다만,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가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대상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전 |
|------------------------------------------------------------------------------------|-------------------|

2. 총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가 500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3조의2제1항제1호 관련)

| 구분        |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                                                                                                                                                                                             |
|-----------|-----------------------------------------------------------------|---------------------------------------------------------------------------------------------------------------------------------------------------------------------------------------------------------------------------|
| 가. 도로의 건설 |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도로의 건설사업 | 1)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br>2)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허가 전<br>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나. 철도의 건설 |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                                                                                                                                                            |

|           |                                                                                                               |                                                                                                                                                                                                          |
|-----------|---------------------------------------------------------------------------------------------------------------|----------------------------------------------------------------------------------------------------------------------------------------------------------------------------------------------------------|
|           | <p>물」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p>                                                                  | <p>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p>나)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
|           | <p>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p>                                                        | <p>「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p>                                                                                                                                                                        |
|           | <p>3)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설치사업</p>          | <p>「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전</p>                                                                                                                                       |
| 다. 항만의 건설 | <p>1)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 <p>가)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정 전</p> <p>나)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행 허가 전</p> <p>다)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정권자와 협의하는 때</p> |

|                                                                                 |                                                                                                                                                                                            |
|---------------------------------------------------------------------------------|--------------------------------------------------------------------------------------------------------------------------------------------------------------------------------------------|
| <p>2)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 <p>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고시 전</p> <p>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계획의 허가 전</p> <p>다)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공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
| <p>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p>                           | <p>「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는 때</p>                                                                                                                |
| <p>4)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p>                                   | <p>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전</p> <p>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
| <p>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p>                          | <p>「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p>                                                                                                                                   |

|           | 의 개발사업                                                                                                                                                                                                                                                                    | 전                                                                                                                                                                                                     |
|-----------|---------------------------------------------------------------------------------------------------------------------------------------------------------------------------------------------------------------------------------------------------------------------------|-------------------------------------------------------------------------------------------------------------------------------------------------------------------------------------------------------|
| 라. 공항의 건설 |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                                                                                                                                                                                                                        |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전<br>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마. 에너지 개발 | 1)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사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br>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사업: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br>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사업: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사업: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br>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사업: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 |

|                                                                             |                                                                                                     |  |
|-----------------------------------------------------------------------------|-----------------------------------------------------------------------------------------------------|--|
|                                                                             | 16호다목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중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인가 또는 신고(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상이 아닌 사업 |  |
| 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의 설치사업. 다만, 같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전                                                                |  |
| 4)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 중 해저광물의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채취권 설정의 허가 전                                                               |  |
|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사업 중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 설치사업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전                                                                   |  |
|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석유수출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의 석유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 전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                           |  |

|            |                                                                        |                                                                                                                                                                           |
|------------|------------------------------------------------------------------------|---------------------------------------------------------------------------------------------------------------------------------------------------------------------------|
|            | 장시설 설치사업                                                               | 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전                                                                                                                                                           |
|            |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사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전                                                                                                                          |
|            | 9)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건설사업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 전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전                                                                                 |
| 바. 수자원의 개발 | 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사업                       | 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행하는 경우: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전<br>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구둑의 설치사업                                   |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

|             |                                                                   |                                                                                                                                   |
|-------------|-------------------------------------------------------------------|-----------------------------------------------------------------------------------------------------------------------------------|
|             |                                                                   |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전                                                                  |
| 사. 체육시설의 설치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의 체육시설 설치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             |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전<br>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전          |
|             |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 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수립 전<br>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전 |
|             | 4) 「경륜·경정법」 제2조제1                                                 |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                                                                                                                   |

|                        |                                                  |                                                                                                                                        |
|------------------------|--------------------------------------------------|----------------------------------------------------------------------------------------------------------------------------------------|
|                        | 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에 따른 허가 전                                                                                                                              |
|                        |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 허가 전                                                                                                           |
| 아.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br>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 |
| 자. 산림관리시설의 설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사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완료 전                                                                                          |
| 차. 교통시설의 개발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카. 폐기물·(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또                                                  |

|                                                                                                               |                                                                                                                                                                                          |
|---------------------------------------------------------------------------------------------------------------|------------------------------------------------------------------------------------------------------------------------------------------------------------------------------------------|
|                                                                                                               | 는 같은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 전<br>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
| 2)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br>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br>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 | 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계획의 허가 전. 다만, 가축분뇨처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자원화시                                                                                 |

|  |                                                                                    |                                                                                                                                                                                                                                                                           |
|--|------------------------------------------------------------------------------------|---------------------------------------------------------------------------------------------------------------------------------------------------------------------------------------------------------------------------------------------------------------------------|
|  | 설 또는 같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사업. 다만, 가축분뇨처리업자가 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설(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 전을 말한다.<br>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br>다)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가축분뇨의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전 |
|--|------------------------------------------------------------------------------------|---------------------------------------------------------------------------------------------------------------------------------------------------------------------------------------------------------------------------------------------------------------------------|

3. 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구분        |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 |
|-----------|----------------------------|-------------------------------|
| 가. 도시의 개발 | 1)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 |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전 |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전<br>나)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4)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
|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

|                                                                                          |                                                                                                                                                                 |
|------------------------------------------------------------------------------------------|-----------------------------------------------------------------------------------------------------------------------------------------------------------------|
| 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추천 신청 전                                                                                                                       |
|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
| 1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br>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 |
| 1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사                            | 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br>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                                                                                                   |

|                                                              |                                                                                                                                                              |
|--------------------------------------------------------------|--------------------------------------------------------------------------------------------------------------------------------------------------------------|
| 업                                                            | 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br>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전<br>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전 |
| 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
| 1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전                                                                                                              |
| 1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
| 1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

|            |                                                                                             |                                                                                                                                                                                                                                             |
|------------|---------------------------------------------------------------------------------------------|---------------------------------------------------------------------------------------------------------------------------------------------------------------------------------------------------------------------------------------------|
|            | 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계획                                                        |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                                                                                                                                                                                                     |
| 나. 농어촌의 개발 |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 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전<br>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전<br>다)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전 |
|            | 2)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승인 전                                                                                                                                                                          |

|                    |                                                                                      |                                                               |
|--------------------|--------------------------------------------------------------------------------------|---------------------------------------------------------------|
| 다.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작성하는 농공단지개발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 전                         |
|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준산업단지 정비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                               |

|                |                                                                   |                                                                                                                                 |
|----------------|-------------------------------------------------------------------|---------------------------------------------------------------------------------------------------------------------------------|
|                | 생산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br>생계획                                             |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br>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br>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7)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br>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2<br>조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계<br>획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br>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br>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br>수립 또는 승인 전                                                            |
|                |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br>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br>20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 사<br>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br>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br>항 본문에 따른 공장의 설립<br>승인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br>에 따라 공장의 설립 승인을<br>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및 입<br>주계약 등의 완료 전 |
|                | 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br>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br>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br>업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br>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br>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br>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br>설계 완료 전                                               |
|                |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br>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br>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br>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br>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br>인 전                                                                      |
|                | 1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br>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1<br>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br>특구개발계획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br>한 특별법」 제6조의2제6항에<br>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br>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br>협의하는 때                                               |
| 라. 관광단지의<br>개발 |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br>에 따른 관광사업. 다만, 같                             | 가) 관광객 이용시설업 또는<br>국제회의업의 경우: 「관광                                                                                               |

|  |                                                                |                                                                                                                                                                                                                                                            |
|--|----------------------------------------------------------------|------------------------------------------------------------------------------------------------------------------------------------------------------------------------------------------------------------------------------------------------------------|
|  | 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br>른 여행업은 제외한다.                               | 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br>른 등록 전<br>나) 관광숙박업의 경우: 「관<br>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br>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br>다) 카지노업의 경우: 「관광<br>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br>른 허가 전<br>라) 유원시설업의 경우: 「관<br>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br>따른 허가 전 또는 같은 조<br>제4항에 따른 신고 전<br>마) 관광 편의시설업의 경우:<br>「관광진흥법」 제6조제1항<br>에 따른 지정 전 |
|  |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br>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br>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br>조성사업 |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br>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
|  | 3)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br>에 따른 공원사업                                 | 가) 「자연공원법」 제4조제2<br>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공<br>원사업을 하는 경우: 「자<br>연공원법」 제19조제2항에<br>따른 공원사업 시행계획의<br>결정 전<br>나) 「자연공원법」 제4조제2<br>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br>닌 자가 공원사업을 하는<br>경우: 「자연공원법」 제20<br>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             |                                                                            |                                                                                                                                                                                                        |
|-------------|----------------------------------------------------------------------------|--------------------------------------------------------------------------------------------------------------------------------------------------------------------------------------------------------|
|             |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br>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 5) 「온천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 「온천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
| 마. 특정지역의 개발 |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지정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제45조제4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                                                                 |           |
|------------------------------------------------------------|-----------------------------------------------------------------|-----------|
|                                                            |                                                                 | 장과 협의하는 때 |
| 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비고

1.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는 가장 먼저 허가·인가·승인·결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세계유산지구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 나. 사업의 허가등을 할 당시에 대상사업이 제3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이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세계유산지구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제3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거나, 동일 세계유산지구에서 그 사업 규모와 신규로 허가등을 받은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 다. 사업의 허가등을 할 당시에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시행되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영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구역 일부가 세계유산지구 내에 포함된 경우

라. 하나의 대상사업의 사업구역이 세계유산지구의 안과 밖에 걸쳐 있는 경우  
 마. 해당 사업의 허가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세계유산지구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허가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허가등이 되는 사업(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규모와의 합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 2)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동일 세계유산지구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세계유산지구에서 같은 사업자가 신규 허가등을 받으려는 같은 종류의 사업규모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의 허가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4. 하나의 사업계획에 위 표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하나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복합사업에 대해 하나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통합 작성하거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함께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에 따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 [별표 2]

###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의10제4항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처분권자의 보완 요구에 성실히 따른 경우
- 2)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 | 법 제11조의8 제3항제1호 | 지정취소  |       |          |

|                              |                 |          |          |          |
|------------------------------|-----------------|----------|----------|----------|
| 은 경우                         |                 |          |          |          |
| 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법 제11조의8 제3항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다.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 제11조의8 제3항제3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90일        |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명) |     |  | 생년월일            |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기관의<br>일반 현황 | 기관명      |     |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  | 홈페이지 주소         |  |
|              | 설립연월일    |     |  |                 |  |
|              | 설립 목적    |     |  |                 |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6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p>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p> <p>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p> <p>1) 국·공립연구기관</p> <p>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합니다)</p> <p>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p> <p>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출연 연구원</p> <p>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과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p> <p>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p> <p>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갖출 것</p> <p>1) 국가유산 관련 학과 및 세계유산, 건축·토목, 도시계획·도시공학, 조경·경관·지질·생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근무 경력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자</p> <p>2) 1)에 따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p> <p>다.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p> <p>2. 세계유산영향평가 사업계획서</p> <p>3. 최근 3년간 세계유산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수행 실적에 관한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 수수료<br>없음 |
| 담당 공무원<br>확인사항 | <p>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p> <p>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p>                                                                                                                                                                                                                                                                                                                                                                                                                                                                                                                                                                                                                                                                                                                              |           |

210mm×297mm[백상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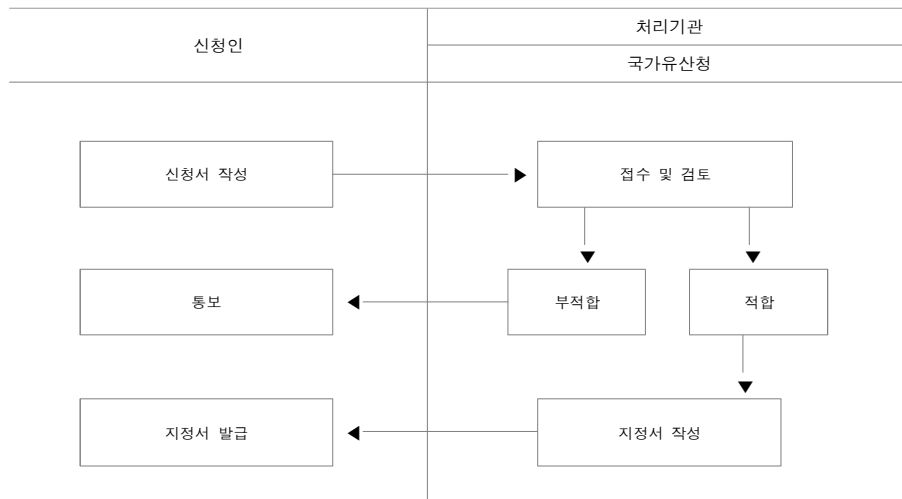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주소(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앞쪽)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9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기관의<br>일반 현황 | 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              | 사무소 소재지  |     | 홈페이지 주소         |          |  |
|              | 설립 연월일   |     |                 |          |  |
|              | 설립 목적    |     |                 |          |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10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br>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br>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합니다)<br>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br>나. 세계유산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수행 실적이 있을 것<br>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등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것<br>2. 사업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br>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br>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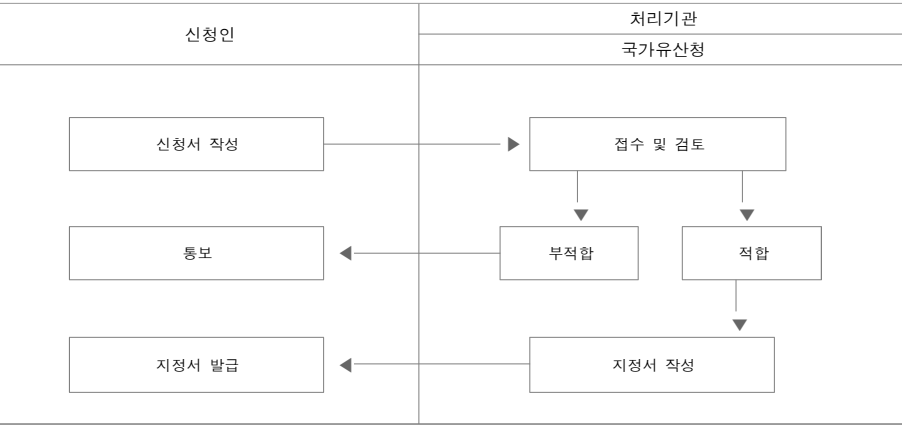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제 호

##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 지정서

1. 기관명:
2. 주소(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10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제3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br>1. 총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가 500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br>2. 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br>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이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시행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세계유산지구의 관할 시·도지사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도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자연유산위원회의

#### <신 설>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대상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해당 대상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가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대상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해당 대상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3(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신 설>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 및 범위

2.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세계유산 주변 환경개선 등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3. 경관 저해, 지형 훼손 등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4.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하 “제거·저감방안”이라 한다)의 적정성

5. 제거·저감방안을 적용한 후 남는 부정적 영향(이하 “잔존영향”이라 한다)의 규모 및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4(대상사업의 사전검토)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2

항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요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전검토요청서(이하 “사전검토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상사업의 위치
2. 대상사업의 면적, 총사업비 등 규모
3. 대상사업 구역 내 건축 예정 건축물의 최고높이
4.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계유산 구역과의 이격거리
5. 대상사업의 허가·인가·승인·결정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허가기관의 장”이라 한다)

6.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대상사업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

용을 알려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사전검토요청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허가기관의 장 및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라 한다) 작성 대상: 대상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작성 대상: 대상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이 경우 사업자가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④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 <신 설>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후 대상사업의 계획 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검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5(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① 제3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 결과에

따라 작성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대상사업 및 해당 세계유산에 대한 구체적 설명
2.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
3. 제거·저감방안
4. 잔존 영향의 규모 및 범위
5. 세계유산지구 내 토지 소유자, 거주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6.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중합의견

③ 사업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초안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 또는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제2항제5호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20일 이상 들어야 한다.

#### <신 설>

④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6(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과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갖추는 것

가. 국가유산 관련 학과 및 세계유산, 건축·토목, 도시계획·도시공학, 조경·경관·지질·생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근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가목에 따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추는 것

②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세계유산영향평가 사업계획서

3. 최근 3년간 세계유산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된

<신 설>

연구 또는 업무수행 실적에 관한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7(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의5에 따라 제출된 세계유산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 방법이 적절한지 및

분석결과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2. 제거·저감방안이 적절한지 여부

3. 잔존 영향의 유무 및 그 정도에 관한 예측이 타당한지 여부

4. 대상사업의 추진으로 달성되는 공익·사익과 해당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형량이 적절한지 여부

②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2. 대상사업 또는 해당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

3.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산 관련 학과 및 세계유산, 건축·토목, 도시계획·도시공학, 조경·

<신 설>

경관·지질·생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근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가목에 따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3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승인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의7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승인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 허가기관의 장 및 해당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승인 사실을 통보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또는 규모 이상

<신 설>

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7 및 이조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1. 대상사업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2. 대상사업의 면적, 총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등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3. 대상사업 구역 내 건축 예정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또는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4.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계유산 구역과의 이격거리가 감소하는 경우  
 제3조의9(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보완·조정 등) ①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또는 대상사업 계획 등(이하 “대상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3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의7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상사업계획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대상사업계획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보완·조정

2. 제1항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상사업계획등의 보완·조정

③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완·조정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보완·조정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대상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에 변경사항 대비표를 첨부하여

<신 설>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제3조의7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제3조의10(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세계유산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수행 실적이 있을 것

3. 법 제11조의8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등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

터 지정서를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8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반기별 운영실적: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 |                  |
| 연 락 처         | (042) 481 - 4845 |